##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32

발의연월일: 2021. 2. 23.

발 의 자:윤재갑・이학영・문진석

박상혁 • 이동주 • 민형배

민홍철 • 이원택 • 홍문표

이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농어업재해보험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를 사업자에 유리하게 하거나 약관을 임의 변경하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농어업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손해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등에 대하여 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11조의 7 신설 등).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방법과 절차에"를 "방법, 절차 및 타당성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보험약관, 보험료 등의 서류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변경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해보험의 약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자의 동의없이 보험약관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재해보험금과 해당 지원금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7을 제11조의8로 하고, 제11조의7 및 제11조의9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7(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는 재해보험가입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손해평가 를 재실시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5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9(보험금의 지급)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금액 중 자부담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제3조(심의회) ①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	
험"이라 한다) 및 농어업재해	
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	
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	
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	
의회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손해평가의 <u>방법과 절차에</u>	4 <u>방법, 절차 및 타</u>
관한 사항	<u>당성에</u>
<u>&lt;신 설&gt;</u>	4의2.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
	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보험사업자) ① ~ ③ (생	제8조(보험사업자)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
	업을 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
	라 제출한 보험약관, 보험료 등

④ (생 략)

<신 설>

<u><신</u> 설>

<신 설>

- 의 서류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생 략)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을 변경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의2(재해보험의 약관) ① 재 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 자의 동의없이 보험약관을 변 경할 수 없다.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 가입자가 「농어업재해대책 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 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재해보험금과 해당 지원금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의7(손해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는 재해 보험가입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1조의8(보험금수급전용계좌) (생 략) <신 설>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손해평가를 재실시하여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 을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 제11조의7과 같음)

제11조의9(보험금의 지급) 재해보 험사업자는 재해보험금을 지급 할 때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 금액 중 자부담비율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